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06
----------	-------

발의연월일 : 2018. 9. 4.

발의자 : 송기현 · 유통수 · 심기준

신창현 · 이춘석 · 백혜련

김종민 · 김성수 · 안호영

금태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함.

또한, 본 법률의 입법 계기가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된 사건에 있어서도 동 법률을 적용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상승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됨.

이에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

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
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p> <p>① (생 략) <u><신 설></u></p> <p>② <u>제1항</u>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1. · 2. (생 략)</p> <p>③ <u>제1항</u>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併科)한다.</p>	<p>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u>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p> <p>③ <u>제1항 또는 제2항</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 또는 제2항</u>----- ----- -----.</p>